

순천시 공고 제2023 - 808호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세입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을 4급에서 5급으로 확대(안 제2조제5항)
-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등 위촉위원 참여보장(안 제5조제2항)

3. 입법예고 기간 : 2023. 3. 31. ~ 2023. 4. 20.(20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4월 20일까지 순천시장(징수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61-749-3281, FAX : 061-749-462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서면 제출처 : 순천시 장명로 30, 순천시청 징수과

붙임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4급” 을 “5급” 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